

# ISO 14001과 ISO 9001의 연관성

다음 <표 1>과 <표 2>는 ISO 14001과 ISO 9001의 연관성과 넓은 의미에서 기술적 일치성, 그 반대의 경우를 비교하였다. 이같은 비교의 목적은 이미 제정된 규격 중의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에게 두 체제의 연계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. 두 규격의 조항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는 두 조항의 요건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립된다. 여기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많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두 규격 사이에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다.

<표 1> ISO 14001과 ISO 9001의 대비

ISO 14001		ISO 9001	
일반 요건	4.1	4.2.1	개요
환경 방침	4.2	4.1.1	품질 방침
계 획			
환경측면	4.3.1	-	
법률 및 그 밖의 요건	4.3.2	- <sup>(1)</sup>	
목표 및 세부목표	4.3.3	- <sup>(2)</sup>	
환경경영 추진계획	4.3.4	-	
	-	4.2.3	품질계획
실행 및 운영			
구조 및 책임	4.4.1	4.1.2	조직
훈련, 인식 및 자격	4.4.2	4.1.8	훈련
의사소통	4.4.3	-	
환경경영체제 문서화	4.4.4	4.2.1	개요
문서관리	4.4.5	4.5	문서 및 자료관리

환경경영 체제(ISO 14000) 시리즈

운영관리	4.4.6	4.2.2	품질 시스템 절차
	4.4.6	4.3 <sup>(3)</sup>	계약검토
	4.4.6	4.4	설계관리
	4.4.6	4.6	구매
	4.4.6	4.7	고객 지급품의 관리
	4.4.6	4.9	공정관리
	4.4.6	4.15	취급, 보관, 포장, 보존 및 인도
	4.4.6	4.19	서비스
비상시 대비 및 대응	-	4.8	제품 식별 및 추적성
	4.4.7	-	
점검 및 시정조치 감시 및 측정	4.5.1 제1 및 제 3단락	4.10	검사 및 시험
	-	4.12	검사 및 시험상태
	-	4.20	통계적 기법
	4.5.1 제 2단락	4.11	검사,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
	4.5.2 첫 문장	4.13	부적합품의 관리
	4.5.2 첫 문장 제외	4.14	시정 및 예방조치
	4.5.3	4.16	품질기록의 관리
	4.5.4	4.17	내부 품질감사
경영자 검토	4.6	4.1.3	경영자 검토

주 ; <sup>(1)</sup> ISO 9001의 4.4.4에 언급된 법률요건  
<sup>(2)</sup> ISO 9001의 4.1.1에 언급된 목표  
<sup>(3)</sup> 품질 이해 관계자(고객)와의 의사 소통

<표 2> ISO 9001과 ISO 14001의 대비

9001		14001	
경영자 책임 품질 방침	4.1.1	4.2	환경 방침
	-	4.3.1	환경 측면
	- <sup>(1)</sup>	4.3.2	법률 및 그 밖의 요건
	- <sup>(2)</sup>	4.3.3	목표 및 세부 목표
	-	4.3.4	환경 경영 추진 계획
	4.1.2	4.4.1	구조 및 책임
경영자 검토	4.1.3	4.6	경영자 검토
품질 시스템 개요	4.2.1 첫 문장	4.1	일반 요건
	4.2.1	4.4.4	환경 경영 체제 문서화
	4.2.2	4.4.6	운영 관리
	4.2.3	-	

계약 변경	4.3.3 <sup>(3)</sup>	4.4.6	운영 관리
설계 관리	4.4	4.4.6	운영 관리
문서 및 자료 관리	4.5	4.4.5	문서 관리
구매	4.6	4.4.6	운영관리
고객 지급품의 관리	4.7	4.4.6	운영 관리
제품 식별 및 추적성	4.8	-	
공정 관리	4.9	4.4.6	운영 관리
검사 및 시험	4.10	4.5.1 제1 및 제 3단락	감시 및 측정
검사,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	4.11	4.5.1 제2 단락	감시 및 측정
검사 및 시험상태	4.12	-	
부적합품의 관리	4.13	4.5.2 첫 문장	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
시정 및 예방조치	4.14	4.5.2 첫 문장 제외	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
	-	4.4.7	비상시 대비 및 대응
취급, 보관, 포장, 보존 및 인도	4.15	4.4.6	운영 관리
품질기록의 관리	4.16	4.5.3	기록
내부 품질감사	4.17	4.5.4	환경 경영체제 감사
훈련	4.18	4.4.2	훈련, 인식 및 자격
서비스	4.19	4.4.6	운영 관리
통계적 기법	4.20	-	
	-	4.4.3	의사소통

주 ; <sup>(1)</sup> 9001의 4.4.4에 언급된 법률요건

<sup>(2)</sup> 9001의 4.1.1에 언급된 목표

<sup>(3)</sup> 품질 이해 관계자(고객)와의 의사 소통

**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**

**[완성검사의 대상]**

**Q**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당초 용량 200 RT 냉온수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50RT 냉온수기로 변경함으로써 월사용예정량이 4,948m<sup>3</sup>에서 3,711m<sup>3</sup>로 감소되고 배관변경이 없는 경우 완성검사 대상여부와 냉온수기 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, 검사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월사용예정량 변경방법에 대하여?

**A** 위의 질의한 가스시설은 월사용예정량 2,000m<sup>3</sup>이상이므로 특정가스사용시설

에 해당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냉온수기의 교체로 인해 용량이 변경되어 월사용예정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완공도면제출시 변경부분을 확인받으면 될 것이다, 또한 냉온수기 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에 문의하기 바란다. (1998년 7월 10일 안전공사 시설 610-3435)